

구상채권 상각기준

제 정 : 1999.11.19

1차개정 : 2010. 1. 1

2차개정 : 2010. 7. 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43조에 의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가 동 법에 의한 무역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보유한 구상채권의 상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상채권”이라 함은 무역보험법 제53조에 의한 보증채무이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 및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대지급금을 말한다.
2. “구상권행사의 유예”라 함은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 강제집행, 소(지급명령 포함)제기의 보류 또는 취하 및 기타 권리의 행사를 보류하거나 취하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거나 당초보다 유리하게 채권보전이 되는 조건으로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권리행사를 보류, 또는 취하하는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구상권 행사의 유예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상각인정 기준) 구상채권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각할 수 있다. 다만, 재산보유유무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은 <별표>에 의한다.

1.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채권이 무효로 된 경우

제4조(상각부인) 구상채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각할 수 없다.

1. 구상실익가액이 5백만원 이상의 물적담보권 또는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가 되어 있는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물건을 보유한 구상채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과거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포함) 개시결정을 받았거나,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기업에 대한 구상채권. 다만, 회생계획(과거 화의법상 화의조건,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 포함)상의 채무변제 의무를 2년 이상 미이행한 기업의 채권은 제외한다.
3. 가동중인 기업에 대한 구상채권
4. 구상채권에 대하여 분할상환의 약정이 되어 있거나 기타 구상채권의 회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구상채권
5. 구상권행사의 유예를 결정한 기업에 대한 구상채권

제5조(구상실익가액의 산정) ①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물건의 구상실익가액은 감정평가법인(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과 한국감정원을 말하며, 이하 같다)의 감정가격과 법원의 최종의 경매 최저가격 중 적은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는 미등기임차보증금, 등기된 선순위 임차권(실제 채권액이 설정액 이내인 때에는 실제 채권액)

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이나 법원의 사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에서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구상실익가액으로 한다.

1. 토지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2. 건물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한국감정원이 발간한 최근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최상급을 적용한 금액에서 법인세법시행령상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건물신축단가표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동 단가표를 적용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업점장이 최근의 매매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금액

제6조(상각방법) ① 구상채권의 상각은 기업체별로 일괄 상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별로 부분 상각할 수 있다.

② 상각승인 받은 구상채권은 회계연도 말에 상각처리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달리 상각일을 정한 때에는 그 정한 날에 상각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1999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재산보유 유무 세부심사기준

상 각 사 유	심 사 서 류
<p>1. 최종 보증취급이후 최종 주소지까지 사업장(본점, 지점, 공장 등) 소재지(개인의 경우 거주지)의 부동산 소유여부</p>	<p>○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p> <p>○ 보증취급 당시 사업장소재지로부터 최종 사업장 소재지(개인의 경우 거주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다만,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정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재산세과세 증명서나 미과세증명서)</p> <p>* 최종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등은 원칙적으로 상각승인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한다. 단, 사고시 등예기 재산조사한 물건이 채무관계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조사를 생략한다.</p>
<p>2. 부동산 소유여부 확인 결과 다음의 각항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추가 확인</p>	
<p>가. 당해 주소지에 의한 부동산등기부 추적조사 결과 당해 지번에 부동산 등기가 없는 경우</p>	<p>○ 부동산등기부분상 미등기 사실에 대한 법무사 또는 조사직원의 부동산등기부 열람조서</p>
<p>○ 미등기 사실여부 및 당해 부동산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p>	<p>○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조사직원의 현황조사확인서</p> <p>* 미등기 사유가 구획정리에 따른 지번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지번의 부동산 소유여부를 추가 확인함</p>
<p>○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 대위등기에 의한 회수 가능 및 회수실익 여부</p>	<p>○ 실제로 존재하나 대위등기가 불가능하거나 회수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조사직원의 사실확인서</p>
<p>나. 제3자 앞 가등기의 경우</p>	
<p>○ 채무면탈 목적의 인위적 가등기인지 여부</p> <p>* 제3자 앞 가등기된 채권을 상각처리한 경우 가등기 상태의 변동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함</p>	<p>○ 조사직원의 가등기권자에 대한 등기 목적 조사 보고서</p>
<p>3. 제3자 앞 근저당 설정의 경우</p>	
<p>○ 선순위 과다로 가압류 등 법적절차의 실익이 없는지 여부</p>	<p>○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추정 감정가 또는 법원 사정가 관련 서류 다만, 실익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발행한 공시지가 및 건물신축단가표 등에 의한 영업점 추정감정가</p> <p>*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 설정금액 및 실채권금액과의 비교</p>